# 사운드 제작 계약서

우강건 (이하 "갑" 이라고 함)와 람 스튜디오(이하 "을" 이라고 함)은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.

- 다 음 -

## 제 1 조 (기본 원칙)

거래는 상호 이익 존중 이념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한다

#### 제 2 조 (제 작)

- 1. "을"은 계약기간동안 "갑"이 요청한 App Ai-Eng 음악 1곡을 "갑"에게 제공한다.
- 2. 시안이란 완성품 규격에 준하는 전체 작업물을 말한다.
- 3. "을"은 "갑"의 요청에 따라 시안을 완성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금 지불 후 2회의 수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. 이후 수정 작업은 신규 작업으로 처리한다.
- 4. 완성품의 규격 및 퀄리티는 별도 전달되는 제작 요청서 내용에 따라 합의한다.
- 5. "을" 수행 하여야 할 세부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작업항목	비용
BGM	인게임 음악	₩1,100,000

6. 본 계약 체결 후 "갑"은 제작 및 수정에 필요한 자료를 "을"에게 제공하여야할 의무가 있다.

## 제 3 조 (계약기간 및 계약금액)

- 1. 전체 계약기간은 2020년 2월 3일부터 2020년 2월 17일까지로 한다.
  - 단, 쌍방에게 특별한 사유 발생시 사전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유보 할 수 있다.
- 2. 총 계약 금액은 총 <mark>일금일백일십만원정(₩1,100,000/VAT포함)</mark>으로 약정하고,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.
  - "을"은 시안을 납품한 후 "갑"에게 계약금 <mark>일금일백일십만원정(₩1,100,000/VAT포함)</mark>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"갑"은 세금계산서 수령 후 <mark>14</mark>일 이내 "을" 명의의 지정계좌로 현금 지불해야 한다.

## 제 4조 (납 품)

"을"은 "갑"으로부터 요청 받은 모든 결과물을 <mark>2020년 2월 6일까지</mark> 완료한다.

단, 실무상의 사유로 상기 납품일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"갑"과 "을"이 상호 합의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#### 제 5 조 (결과물 및 저작권)

- 1. "갑"은 "을"이 제작한 효과음의 독점적 이용허락의 권리를 갖는다.
- 2. "갑"은 "을"이 제작한 음악의 독점적 이용허락의 권리를 갖는다.
- 3. "을"이 제작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는 "을"이 소유한다.
- 4. "을"은 "갑"의 승인 없이 제작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.
- 5. "을"은 "결과물"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침해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"을"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한다.
- 6. "갑"은 전체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"을"이 제공한 결과물(시안 및 완성품)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.

#### 제 6 조 (계약파기 및 계약불이행)

"갑"과 "을"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함으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당사자 일방은 이를 10일이내에 시정하여야한다. 합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파기할 수 있다.

- 1. "을"이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제작물의 납품을 거부하는 행위
- 2. "갑"이 아무런 예고없이 "을"에게 계약금 지불을 유보하는 행위
- 3. "을"의 귀책사유로 제 4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시안을 납품하지 못하여 "갑"의 게임 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
- 4. "갑" 또는 "을"이 더 이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사유 (계약불이행) 발생시

#### 제 7조(손해배상과 면책사항)

- 1. "을"이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인 사유로 제 3조의 제작물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, "갑"은 계약금에 대하여 연 20%의 지연이자를 납입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차감 후 "을"에게 지급한다.
- 2. "갑"이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인 사유로 제 3조의 계약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, "갑"은 계약금에 대하여 연 20%의 지연이자를 납입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증감 후 "을"에게 지급한다.
- 3. 제 6조 3항에 의한 계약파기의 경우, "을"이 지체없이 지급받은 계약금을 모두 환불하고 "갑"은 납품받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다. 단, "갑"의 귀책사유로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"을"은 계약금을 환불할 의무가 없다.

#### 제 8 조 (준거법)

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한다.

# 제 9 조 (중 재)

- 1. 이 계약으로부터,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되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. 중재인(들)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
- 2. 본 계약과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재판 관할은 대구소재 민사 지방법원으로 정한다.

# 제 10 조 (효력발생)

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이메일로 주고받은 전자적 문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.

본 계약은 쌍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완전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며, "갑"과 "을"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.

# 2020년 2월 3일

"갑"

주 소 : 상 호 : 대 표 :

"을"

주 소 : 대구광역시 남구 영선시장2길 16-5, 진영빌 202호

상 호 : 람 스튜**디오라** 대 표 : 황 규 람